

원화환산납입특약 약관

원화환산납입특약 약관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

제1조 【특약의 체결 및 효력】

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2조 【특약의 보험료】

제3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

제3조 【보험계약의 기준통화】

제4조 【환산기준일】

제5조 【원화환산율】

제6조 【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】

제4관 기타사항 등

제7조 【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
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1조 【특약의 체결 및 효력】

-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(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“주계약”, 보험계약자는 “계약자”, 보험회사는 “회사” 라 합니다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.

제2관 보험료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)

제2조 【특약의 보험료】

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

제3관 기준 통화 및 환산 기준

제3조 【보험계약의 기준통화】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제2회 이후 보험료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(이하 “원화” 라 합니다)로 합니다.

제4조 【환산기준일】

-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(이하 “환산기준일” 이라 합니다)이라고 합니다.
- ②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의 직전일 영업일을 환산 기준일로 적용 합니다.

③제2항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(이하 “주거래 은행” 이라 합니다)의 영업일(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)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로 합니다.

제5조 【원화환산율】

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(최종고시환율)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원화환산율로 합니다.

제6조 【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】

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
제4관 기타사항 등

제7조 【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】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